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나355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3나35598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단15261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연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변론 종결 2024. 8. 28.

판결 선고 2024. 11. 13.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가단15261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0. 8.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47,399,8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399,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봐도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별지에 기재상 오류가 존재하므로, 그 별지는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바꾼다).

2. 추가 판단

가. 취소 대상인 사해행위의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분할협의 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C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금액(510,000,000원)이 C의 상속지분 상당액을 초과하고, 피고는 피고 자신의 고유 상속지분 중 일부까지 출연하여 C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였으므로, 더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목적물인 C의 상속지분 상당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의 위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 완료 이후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을 일부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처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변제행위를 두고 사해행위의 성립을 방해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인바(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피고의 위 변제행위나 피고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아닌 이 사건 분할협의 자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 변제 금액이 C의 상속지분 상당액을 초과한다거나 피고가 자신의 고유재산을 출연하여 C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라는 결론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다른 채권자인 H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지분 가액을 초과하는 510,000,000원을 변제하여 가액배상을 이미 마쳤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주식회사 I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중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소송은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형성소송으로, 재판상 청구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고,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도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며, 그에 따른 취소와 원상회복만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게 되어 사해행위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민법 제406조, 제407조 참조),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권자취소권이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으로 하여금 취소권의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게 하고 아울러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공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643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C의 다른 채권자들인 대한민국, 주식회사 I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쳤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설령 피고가 친동생인 C 대신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변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공시기능도 충분하지 못하므로,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는 책임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이 그 공동담보가치를 회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황중연

판사김경년

판사이종욱

별지